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61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 조은희 • 이인선 • 서일준

이만희 • 박정하 • 신성범

김용태 · 강명구 · 서천호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 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의 운영정지"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의 운영정지"로 한다.

제2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 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제4조(「도로교통법」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3조의 2에서"로,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을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의 준공내용을 고시

하는 때

-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고시하는 때
-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검사·준공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소하천정비법」의 개정)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로,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을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

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거나 신고가수리되면 관할관청이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관청이 제1 항에 따른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도선사업자"를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8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9조(「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하천정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언 앵	개 경 원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3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u>취소할 수 있다</u> . 다	<u>취소하거나 1년 이</u>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의 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u> 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
	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2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u>기관의 운영정지</u> 를	<u>1</u> 년 이내의 기간을 정
명할 수 있다.	하여 기관의 운영정지
	·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의제) (생 략)	가등의 의제) <u>①</u>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
	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u> 준용한다.</u>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혅 행 개 정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 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 려 주어야 한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 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 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하다.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

- 제26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 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 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 제31조제2항부터 제6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 | 항까지에 따른다. 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u>수 있다</u>.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 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 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 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 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u>삭 제>

<삭 제>

<삭 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제94조<u>(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u> 의신청) ①·② (생 략)

했

혀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 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 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 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제94조<u>(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u> 의신청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정

아

개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 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 조에 따른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	
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	
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	
가 · 면허 · 승인 · 신고 · 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u>이 조에서</u>	<u>이 조 및 제13</u>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	조의2에서
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u>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u>
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	대해서는
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	
의 고시·공고를 한 것으로 본	
다.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u><삭 제></u>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	
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 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 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 에 따른 준공검사 · 준공인가 등 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 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 다.
- 1.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의 준공내용을 고시하는 때
-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 사를 완료하여 고시하는 때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4항에 │ <삭 제> 따라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

<삭 제>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 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 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3조제 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의 준공내용을

고시하는 때

-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 사를 완료하여 고시하는 때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검사·준공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
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	가・허가 등의 의제) ①
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	
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	
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허가・인가・면허・승인・	
신고・결정・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u>이 조에서</u> "인·허가	<u>이 조 및 제10조의3에</u>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	<u>처</u>
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	<u>인·허가등의 관계 행</u>
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
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u>히</u>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	
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소	
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	
을 때에는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 ·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	<u><삭 제></u>

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 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 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 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

<삭 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 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라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일반관광유라선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

개 정 안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거나 신고가 수리되면 관할관청이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석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관청이 제 1항에 따른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 하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 사항 외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 "유·도선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 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관 할관청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 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 략) 록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

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다음 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

---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 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 (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 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u><삭 제></u>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	<u>②</u>
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	
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에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u>관계</u>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다. <u>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u>	<u><후단 삭제></u>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	
<u>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u>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u>다.</u>	

<u>④</u> (생 략)	<u>③</u> (현행 제4항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생 략)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u><신 설></u>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
	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